

헌재로 간 탄핵안 신속 심리 예상

공개변론 열고 반드시 구두변론...尹대통령 안 나와도 심리 진행 법적책임 묻는 절차 시작...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임을 감안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 직접 헌재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도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했다.

헌재는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지 않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재판관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견해다.

심판정에서 재판관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이 있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

이를 위해 헌재는 헌법연구관들을 대거 투입해 법리 검토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하고 필요시 예외적으로 변론을 여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과 달리 탄핵심판은 피소추인 등 당사자와 관계인을 불러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이는 각 헌법재판의 특성에 기인한다. 탄핵심

윤대통령 탄핵가결 이후 남은 일정



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반드시 구두변론을 해야 한다. 이를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이라고 부른다.

반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당사자가 없거나 대립적 소송 구조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두변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임의적 구두변론 사건이라고 한다.

변론은 일반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국



유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0일이 걸렸다.

헌재는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법 53조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의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규명되지

는 않은 상태다.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도 증인을 다수 신청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실제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기초 사실부터 첨예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불출석하더라도 헌재는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법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했기에, 만약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첫 기일은 사실상 심리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끝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7년 1월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도 당사자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만 정한 채 9분만에 끝났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으로 총 6명이다. 공석 3명이 뒤늦게 취임해도 결론을 내는 평의에 참여할 수 있고, 심리 정족수에 관한 헌재법 조항은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탄핵심판의 선고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동의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추를 기각하게 된다.

尹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6명'

진보 우세 흐름 속 사안 따라 균형...공석 채워지면 9명이 결정 6명 이상 찬성시 대통령 파면 결정...중대성 고려해 결론 낼 듯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4일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헌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60·1971)·정정미(60·25기) 재판관은 김영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6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했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하고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6·1871)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66·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61·2971) 서울서부지방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이념적 지향은 전반적으로 진보 우세 흐름 속 사안에 따

라 균형을 이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법원 재직시 활동과 그동안의 헌재 결정을 봤을 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이 모두 취임한 경우를 상정했을 때에는 진보 2명, 보수 1명으로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9월 김기영 당시 재판관과 함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미선 재판관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판사 시절 노동법 전문가로 꼽혔다.

김형두 재판관은 법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를 거쳐 차장을 지냈고, 일선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쳤다. 고 광운대 서울대 교수가 만들어 판사·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었다.

정정미 재판관은 주로 대전 지역에서 재판

담당한 고법판사 출신이다. 안동완 검사 탄핵, 기후위기·국보법·군형법 헌법소원 등에서 진보적 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다양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해왔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과 안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

김복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았다. 현직 중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취임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법원장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우리법 해체 이후 생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추천인 마은혁 부장판사는 대표적 진보 성향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판사 임관 전에 운동권 조직에 몸담았고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다.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 논란이 됐고, 친분이 있던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30만 원 후원금을 냈다가 법원장 구두경고를 받았다.

조한창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김영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도울 대표로 일해왔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연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예상 절차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
|-----------------|--|
| 국회 탄핵소추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 |
| 탄핵의결서 제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탄핵심판 결정까지 대통령 권한정지 및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
| 심리 착수 | 헌재, 주심재판관 지정해 탄핵심판 심리 착수 |
| 전원재판부 회부 | 지정재판부(3명) 사전심사 없이 즉시 전원재판부(9명) 회부 |
| 변론 준비기일 | 당사자와 관계인이 증거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 결정 |
| 소환·변론 |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 소환 - 당사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 다시 정해 재소환 - 재소환 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 피청구인(대통령)을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신문 |
| 재판 평의 | 재판관들이 청구 건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논의 |
| 결정문 작성 | 재판관 전원 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 작성 |
| 선고 | 헌법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인용(탄핵 결정) 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 기각 |

연합뉴스

자료: 헌법재판소